

제6장 기타 사례



제6장 기타 사례

사례 28

신청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세입자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오피스텔의 동과 호수 등을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경기조정145, 146 각 손해청구
신 청 인	박○○
피 신 청 인	오비에스 경인티브이(주) (OBS경인TV, 인터넷 OBS경인TV)
중 재 부	경기중재부
접 수 일	2015. 10. 15.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인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소유 오피스텔의 명칭과 호수 등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화면에 노출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도로 인하여 오피스텔 임대가 되지 않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2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1차 심리 이후 문제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였고, 삭제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권유하였고,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OBS경인TV - 뉴스 M 프로그램 『인천경찰청, ‘살인사건 대응 미흡’... 경찰 5명 주의·경고』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12일자, 인터넷 OBS경인TV 10월 12일자 다시보기면)

내 용 - <전략>



인천경찰청, '살인사건 대응' 미흡...경찰 5명 주의·경고

2015년 10월 12일 (월) 20:38:13

박성완 ✉ bowings@obs.co.kr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4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조정대상보도는 다음의 각 프로그램(인터넷 OBS-TV 동일 프로그램을 포함한다)보도로 한다.
 - 2015. 10. 1.자 ‘뉴스M 경기-인천/뉴스라인 인천-경기’
 - 2015. 10. 2.자 ‘뉴스 740’
 - 2015. 10. 12.자 ‘뉴스M 경기-인천’
2. 피신청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제 2항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소사건 또는 소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묻지 아니한다.

2015. 10. 2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

사례 29

세쌍둥이인 신청인들의 백일 사진이 친권자 동의 없이 방송 드라마에서 사용돼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4071 손해청구
신 청 인	오○○ 외 2인
피 신 청 인	(주)문화방송 (MBC-TV)
중 재 부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2015. 12. 08.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일일드라마에서 세쌍둥이인 신청인들의 백일 사진을 얼굴 부분은 출연자들의 얼굴로 합성한 후, 친권자의 동의 없이 수차례 방송하였다.
- 이에 신청인들은 비록 세쌍둥이의 사진 중 얼굴 부분은 합성되어 있지만 세쌍둥이 사진은 희소성이 있어 주변에서 신청인들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또한 세쌍둥이 사진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장면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신청인은 조정신청 후 사진의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으나, 해당 사진에는 신청인들의 붉은 색 옷과 다리 및 발의 일부만이 노출되어 신청인들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신청인들임을 식별할 신체적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신체 부분으로 특징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의 여지가 있지만, 문제가 된 사진은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만으로 당사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측에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지급하는 수준에서 조정을 권유했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MBC-TV - 『위대한 조강지처』 프로그램 (2015년 11월 2일자)

■ 내 용 - 〈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오○○ 외 2인에게 각 5,000,000원씩 총 15,000,000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6년 1월 15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들에게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위 내용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들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01. 06.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